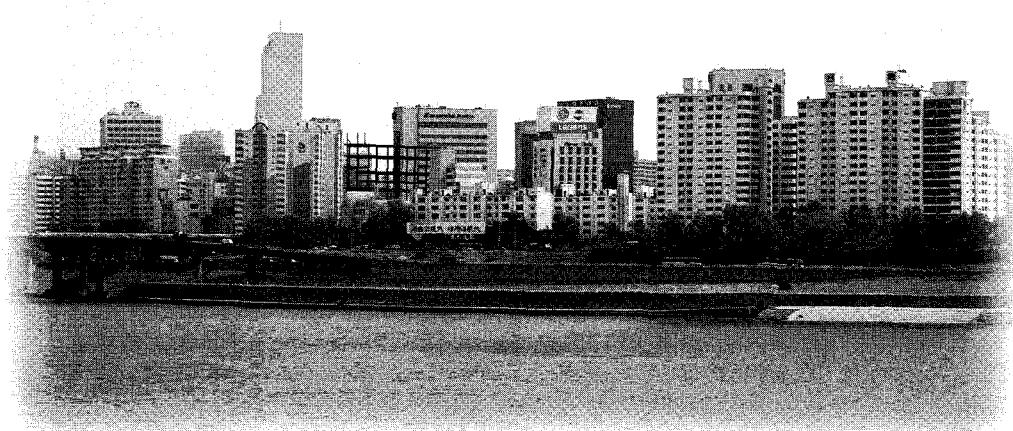




건설업 관리지침 개정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등 제재처분업무의 세부처리기준과 전문건설업종의 등록요건인 기술 능력기준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인정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건설업관리지침(건경 58110-1760 : '99.10.26)이 개정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업관리지침은 건설업의 간접신고제 신설등 최근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 및 국가기술자격법의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고 관련업무 추진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그간 개별 적인 업무지침으로 운영하여 왔던 건설업의 등록, 소재지변경, 양도, 합병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산업종합정보망(CIS) 시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였다. (편집자 주)





제1장 목 적

이 지침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에 의한 건설업 관리에 있어서 공정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장 건설업의 등록

1. 건설업등록관청은 법인(개인)의 주된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시·군·구청장)로 한다.
2. 법인(개인)은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을 2개 이상 보유할 수 없으며, 양도·합병·상속 등의 사유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을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납·등록말소 처리하여야 한다.(토목공사업이나 건축공사업은 토목건축공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으로 봄)
3. 건설업등록시 자본금기준 적격여부확인에 관해서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 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로 확인한다.
 - 나. 법인설립후 90일 이내로서 별도 영업실적이 없이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자가 제출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및 부

채항목을 종합고려하되, 자산항목 입증을 위해 등록신청자(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및 이사명의)의 자산은 불인정)명의의 다음의 서류를 확인한다. 개인기업의 경우도 이를 준용한다.

- (1)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 (2) 30일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 (3) 사무실 임대시 임대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4) 공사용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 (5) 기타 등록신청자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다. 건설업등록관청은 가 및 나의 경우외에도 재무진단서 제출없이 자본금기준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 자본금기준 적격여부 검토시에는 건설업종 종복보유 및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공사업 등 여타 법률에 의하여 자본금보유기준이 있는 업종의 겸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기적 신고는 건설업종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2. 법인(개인)이 2개 이상의 건설업종을 겸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기적 신고는 개별업종별로 하되,



등록기준 적격여부는 당해 법인(개인)이 보유한 전체 건설업종의 등록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주기적 신고에 있어서 자본금기준 적격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의 서류에 의한다.

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외부 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로 확인한다.

나. 가외의 경우에는 별지1의 규정에 의한 재무진단 보고서에 의하여 확인한다.

4. 건설업등록관청은 기타 등록기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건설업등록관청은 주기적 신고수리를 한 경우에 관련규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며,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에 차기 신고기한을 기재하여 교부한다.

제4장 영업소소재지 변경, 양도, 합병 등

1. 주된 영업소소재지 변경에 의하여 건설업등록관청이 변경되는 경우에 건설업등록증 등의 기재사항 변경신청은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가. 처리권자는 변경전 주된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시·군·구청)로 한다.

나. 처리권자는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접수시에 관련증빙서류를 확인하고, 건설업등록증 등을 변경기재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다. 처리권자는 해당업체의 건설업등록대장 등 관련서류 일체를 새로운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건설업등록관청에 이송처리하고, 이송받은 건설업등록관청은 필요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실구비여부 등에 대한 실제확인을 할 수 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 합병에 의하여 당해 건설업종의 주된 영업소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의 업무처리는 다음에 의한다. 동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의 경우도 이를 준용한다.

가. 처리권자는 양도인, 피합병법인, 피상속인을 관할하는 시·도(시·군·구청)로 한다.

나. 처리권자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신고수리를 한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을 변경기재하고, 관련서류일체를 양도,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을 관할하는 건설업등록관청에 이송처리하고, 이송받은 건설업등록관청은 필요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기준적격여부의 확인을 할 수 있다.

3. 건설업자인 법인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신고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로 인한 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은 기재사항변경신청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장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건설업등록관청이 건설업의 등록, 주기적 신고, 건



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 건설업양도, 합병, 상속,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부과, 등록말소, 과태료부과 기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8근무시간 이내에 이를 건설행정정보시스템(Construction administration Information System : con.kiscon.net)에 입력처리하여야 한다.

제6장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1.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결정기준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재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종류(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는 다음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정지처분

- (가) 제재처분대상 건설업자가 객관적으로 보아 시공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된 때
- (나) 제재처분대상 건설업자가 과징금부과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부과된 과징금이 체납된 때
- (다) 다음에 해당되는 사유로 법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제재처분하는 때

-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②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때

③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때

(라) 법 제82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10인이상의 사망사고가 있는 때

(2) 과징금부과

(가) 위반행위가 위 영업정지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

나.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중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말소처분을 한다. 다만,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83조제2호(건설업등록기준미달)에 해당되는 건설업자로서 동일한 사유로 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2) 법 제83조제8호에 해당되는 건설업자가 법제82조제1항제2호 또는 법 제83조제2호의 사유가 함께 계류되어 있는 때

2. 제재처분내용(기간 및 금액등)에 대한 결정기준

가. 영업정지기간의 결정기준

영 제80조 별표6에서 정한 기간중 그 2분의1 범위안에서 감경 또는 가중은 다음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감경사유

(가) 처분횟수

- 최근 3년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과태료부과 제외)

(나) 위반동기

- 법령해석상의 착오로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위반하여 위반내용에 대하여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때

(다) 위반내용

-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위반 행위를 한 당사자와 소속 직원 및 근로자 제외)에게 2주이상의 가료를 요하는 피해를 발생한 사실이 없거나 1억원 이상의 물적피해를 발생한 사실이 없는 때. 다만, 당해 위반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허가·인가·등록·신고등의 절차를 허위로 하여 발생된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2) 가중사유

(가) 처분횟수

- 최근 1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과태료부과 제외)

(나) 위반동기

- 당해 위반행위가 제재처분대상 건설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때

(다) 위반내용

-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타인(위반행위를 한 당해 건설업자와 그 소속직원 및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인명피해(사망) 또는 1억원 이상의 물적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실이 있는 때

(3) 감경 또는 가중하는 기간

감경 또는 가중되는 각 사유마다 영 제80조 별표6에 규정된 영업정지기간에서 1월씩 감경 또는 가중. 다만, 영업정지의 총기간은 동법 시행령 제8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거 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과징금액의 결정기준

영 제80조 별표6에서 정한 금액중 그 2분의1의

법위안에서 감경 또는 가중은 다음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감경 및 가중사유

영업정기기간 결정기준의 감경 및 가중사유와 같다.

(2) 감경 및 가중의 비율

감경 및 가중 사유마다 별표6에 정한 과징금의 1/6씩 감경 또는 가중한다.

(3) 과징금의 산정

(가) 영 별표6-가목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정액)은 위 (2)감경 또는 가중의 율에 따라 정액으로 산정한다.

(나) 영 별표6-나목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위반한 도급금액(하도급금액 포함)의 각 구역사이의 과징금율은 직선보간법(直線補間法)에 의하여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로 하고, 당해 과징금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징금중 1,00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다) 직선보간법의 적용례는 별지3에 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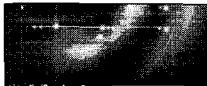
3. 과태료의 결정기준

영 제89조제3항 별표7에서 정한 금액중 2분의1 법위안에서 감경 또는 가중은 다음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감경사유

(1) 처분횟수

- 최근 3년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



(2) 위반동기

- 당해 위반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선행되는 절차의 지연등으로 인하여 발생되었거나 건설업자의 과실이 경미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때

나. 가중사유

(1) 처분횟수

- 최근 1년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2) 위반동기

- 당해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발생된 때

다. 감경 또는 가중의 율

감경 또는 가중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시행령 별표7에서 정한 금액의 1/4씩 감경 또는 가중한다.

4. 기타

가. 법령 위반행위의 통보·인지된 때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설업자에게 10~20일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위반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출석등을 통지받은 건설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들어 서면으로 청문등을 연기 요청하는 경우에는 2회까지 청문등을 연기하여 줄 수 있다.

다. 위반건설업자에 대한 청문 등은 별지2에 의하여 위반동기, 내용 등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기록하여 청문에 참석한 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라.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이 계류중인 경우에 처분권자는 소송진행과 별도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최종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당사자에게 치유할 수 없는 피해등이 예상된다면 처분권자는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 이후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장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의 범위

1. 시·도지사가 전문건설업의 등록 및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동법시행령 별표2 비교1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별지4에 의한다.

2. 이 지침 시행당시 종전의 「건설업관리지침」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으로 인정받은 기술자격취득자를 고용한 전문건설업자는 이 지침에 불구하고 당해 기술자격취득자가 교체될 때까지는 등록기준으로 인정한다.

3. 이 지침 시행중 국가기술자격법령의 개정으로 명칭 등의 변경이 있거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지침은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리상태의 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중 사업자의 실질자본(개인인 경우에는 순자산 평가액)에 대한 진단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 의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질자산”이라 함은 회사제시자산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2. “실질부채”라 함은 회사제시부채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수정사항을 반영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3. “겸업사업”이라 함은 진단 대상이 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말한다.
4. “겸업자산”이라 함은 겸업사업에 제공된 자산과 이 지침에서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 및 진단대상사업과 겸업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자산에 대하여 겸업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자산을 말한다.
5. “겸업부채”라 함은 겸업사업 및 이 지침에서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에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와 진단대상사업과 겸업사업에 공통으로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에 대하여 겸업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부채를 말한다.
6. “겸업자본”이라 함은 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7. “진단대상사업 실질자산”이라 함은 실질자산에서 겸업자산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8. “진단대상사업 실질부채”라 함은 실질부채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9.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이라 함은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에서 진단대상사업의 실질부채를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서 진단대상이 되는 사업의 실질자본을 말한다.

제4조 (진단자) 진단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등록된 개업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한다.

제5조 (진단의 기준일) ① 신규신청(등록사항의 주기적 신고)의 경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일(등록사항의 주기적 신고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로 한다. 다만, 당해사업자의 등



록 · 신고수리관청이 진단기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일로 할 수 있다.

② 사업의 양수 · 양도, 법인의 분할 · 분할합병 · 합병, 자본금 변경 등에 따른 기업진단의 경우에는 당해 등록 · 신고수리관청이 지정하는 날 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을 진단기준일로 한다.

1. 양수 · 양도 : 양도 · 양수 계약일
2. 분할 · 분할합병 · 합병 : 분할 · 분할합병 · 합병 등기일
3. 자본금 변경 : 자본금 변경일(법인인 경우에는 변경등기일)

제6조 (장표와 증빙서류의 제시 등) ① 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진단을 받는 자”라 한다)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외부감사 대상회사는 감사보고서 포함), 회계장부, 기타 진단자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작성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재작성 또는 정정 등을 이유로 반려를 요구하지 못한다. 이미 제출된 서류에 오기 또는 오산과 같은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에는 진단자의 입회 하에 정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었거나 정정된 서류에 대하여 추가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진단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자산 등에 대한 입증서류) ① 제6조제1항에서 “기타 진단자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로서 진단을 받는자가 구비하여야 할 입증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현금에 대하여는 현금출납 제증빙
 2. 제예금에 대하여는 진단을 받는자의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된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증명서 및 진단기준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진단일까지의 동 예금에 대한 은행거래실적증명서
 3.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부속명세서
 4.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현물매입증빙 및 예지 보관증
 5. 지급보증금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증빙
 6. 가지급금 및 대여금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증빙
 7.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매입영수증 및 수불장부
 8. 임차보증금 등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9.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10. 9호외의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 매입증빙 및 등록부등본, 검사증
 11. 무형자산은 유상취득에 한하여 그에 관계되는 증빙서
- ② 진단자는 제1항에 규정한 자산별 증빙중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증빙의 제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1의 서류중 일부 미비되어 해당자산의 실재성과 적정성을 검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부실자산으로 본다.

제8조(진단불능) 진단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처리하고, 진단을 받는 자 또는 진단의뢰기관 및 진단자가 소속된 협회에 통보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과 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
2. 진단에 필요한 입증서류와 보완요구를 거부 · 기피 · 태만히 하는 경우
3. 진단받는 자가 작성 · 제출한 서류중 실질자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가 발견된 경우
4. 신설법인이 법인설립 등기일 이후 20일 이내의 날을 진단일로 하여 기업진단을 의뢰하는 경우

제9조(진단방법 및 진단의견) ①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출 또는 제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전문가적 판단에 의하여 성실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실제조사 등을 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 진단을 받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자의 평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위해 반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진단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진단의견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진단을 받는 자의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이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기준 자본액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기재하고, 미달인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기재한다.
2.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기재한다.

제10조(진단보고 및 진단조서의 작성 · 비치) ① 진단을 실시한 진단자는 진단의 결과를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후 진단자가 소속된 협회의 확인을 받아 진단을 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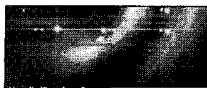
② 진단을 실시한 진단자는 진단조서를 작성 ·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진단보수) 진단보수는 진단업무의 난이도,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진단자와 진단을 받는 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 2 장 회계 부문 진단

제12조(자산 · 부채 및 자본의 평가) ①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산, 부채 및 자본의 평가는 당해 사업의 관련 법규와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②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산은 회사제시자산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수정사항을 가감하고 이 지침에서



열거하고 있는 해당 부실자산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부채는 회사제시부채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수정사항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 ④ 진단을 받는 자의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은 실질자산에서 겸업자산을 차감하여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을 산정하고 실질부채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하여 진단대상사업의 실질부채를 산정한 후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에서 진단대상사업의 실질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부실자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이 지침의 다른 조항에서 부실자산으로 분류된 자산
2.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는 자산의 과대평가분
3. 진단을 받는 자의 소유가 아닌 자산
4. 대손처리하여야 할 자산
5. 창업비, 개발비, 영업권
6. 선급비용 및 선급세금. 다만, 제세 결정기관의 환급통보가 있는 금액은 제외한다.
7. 부도어음. 단,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회수 가능한 금액은 제외한다.
8.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할 대상금액이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

제14조(현금과 전도금의 평가) ① 현금 및 현금등가물은 진단자가 확인한 범위내에서 인정한다.

- ② 진단 대상 업종과 관련이 있는 전도자금에 대하여는 예금잔액증명이 있는 금액을 자산으로 인정한다.

제15조(제예금의 평가) 제예금의 평가는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된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잔액증명서와 진단기준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진단일까지의 은행거래실적증명서를 대조 확인하여 이를 평가한다. 이 경우 예금잔액증명이나 진단일까지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그 예금이 일시적으로 조달된 것으로서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와 제예금중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시까지 지출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인출금액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제16조(유가증권의 평가) 유가증권은 그 매입에 관련된 증빙과 해당 금융기관의 보관증이나 실물조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일시적으로 조달된 것으로서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실자산으로 본다.

제17조(가지급금 등의 자산인정 제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다만,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과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금은 제외한다.

제18조(매출채권 등의 평가) ① 매출채권, 미수금 등의 채권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설정된 대손충당금을 차



감하여 평가한다.

② 매출채권 등에 있어서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한 채권은 이를 부실자산으로 본다. 다만,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권회수기일이 정하여 있거나, 그 채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재고자산의 평가) ①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한다.

② 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 보유한 재고자산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③ 신규면허신청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재고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다만, 분양목적의 주택건설자산은 예외로 한다.

제20조(투자자산의 평가) ① 진단대상 업종과 관련이 없는 투자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② 출자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출자한 법인의 순자산 가치가 그 출자금의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감액하여 평가한다.

2. 조합 등에 대한 출자금은 기준일 현재의 지분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출자금이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분액에서 압류금액을 감액한다.

제21조(보증금의 평가) ①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 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하되 그 금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과다할 경우에는 진단시의 시가에 의하여 이를 평가한다.

②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은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자산으로 인정한다.

③ 차액보증금은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공사준공후에 공사의 불이행이나 하자의 사유가 없이 보관기관이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한 때는 자산으로 인정한다.

④ 영업보증금은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과 보증기간 만료후라도 보증기관이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22조(유형자산의 평가) ① 평가대상이 되는 유형자산은 진단을 받는 자의 소유로서 가동 중에 있거나 가동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에 한하되, 취득가액 혹은 재평가액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감가상각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이를 평가한다. 단,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이를 부실자산으로 본다.

② 운휴 중인 자산과 비업무용자산 및 타인에 임대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제23조(무형자산의 평가) 무형자산은 당해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가액에서 감가상각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제24조(부채의 평가) 부채의 발생사유를 자산, 다른 부채 및 자본과 관련시켜 분석함으로서 부외부채 유무를 검토하여 총부채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25조(겸업자산 및 겸업부채의 평정) ① 회사가 각 계정별로 진단대상업종과 그 이외의 사업을 구분경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분경리에 의한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를 구분한다.

② 회사가 사업별 구분경리를 하고 있지 않거나 일부 계정에 한하여 구분경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겸업비율을 적용하여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를 계산한다. 이에 따른 겸업비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1. 진단대상사업의 수입금액과 겸업사업의 수입금액 비율
 2. 진단대상사업의 유형자산과 겸업사업의 유형자산 금액 비율
 3. 진단대상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에 대하여 관련 법규등에 기준자본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준자본액의 비율
- ③ 겸업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겸업자본이 당해 겸업사업의 기준자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준자본액을 겸업자본으로 본다.

제26조(제조 및 판매업체 등의 신규등록 신청시 실질자본액의 평정) ①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가 건설업종을 신규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충족에 따라 그 해당금액을 진단대상업종의 실질자본으로 평정할 수 있다.

1. 회사가 등록기준자본액을 유상증자한 경우. 다만, 유상증자일 현재,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는 제외 한다.

2. 회사가 등록기준자본액 이상의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한 경우

3. 회사가 등록기준자본액 이상의 이익잉여금을 진단대상업종을 위해 유보하고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유상증자와 자본전입 또는 잉여금유보를 하는 경우에는 진단대상업종을 위한 신규출자 또는 잉여금유보를 입증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서와 동 출자금 및 유보잉여금 해당액을 별도 예치한 예금잔액증명 및 은행거래실적증명서를 진단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7조(자본금의 확인) 자본금의 조달원천과 증감원인을 검토하여 의제납입 또는 부채의 변태처리 여부를 확인하여 의제납입이나 부채를 변태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감액처리한다.

제28조(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 수익과 비용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인식함을 원칙으로 한다.

별지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교1 “다” 목 관련)

전문건설업종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12. 기계설비공사업	기계			메카트로닉스 보일러 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관리 전기공사 건축일반시공 가스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기계설계 보일러 기계정비 판금 제관 금속재료 위험물관리 전기공사 건축일반시공 열관리 가스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 제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플랜트배관 건축배관 금속재료시험 위험물관리 전기공사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 제도 온수온돌 가스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금속화공 및 세라믹							
전기							
건축							
에너지 안전 관리							